



대한태권도협회

수신 시도회원단체장

참조

제목 **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에 의거하여 동승보호자 탑승 등 개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가 **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**이오니,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태권도장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도장 경영난으로 인한 법수용의 어려움 등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‘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’를 구성하여 **정부와 국회에 동승보호자 지원 방안 및 단속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청**하고 있습니다.
4.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국기 태권도 교육의 산실인 태권도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대책 촉구를 위한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귀 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가. 관련 근거: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 및 부칙

나. 시행일: 2020년 11월 27일

다. 주요내용 ※ **붙임파일 참고**

- 1)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
- 2)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및 동승표지 부착 의무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구류
- 3)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 미준수 시 벌금, 구류 및 벌점 부과 등

붙임 1.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경찰청 자료 1부.

2. 도로교통법 전문 1부. 끝.

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



수신처

기안자

임욱

과장

이동신

차장

장승중

부장

이종천

사무처장

류호윤

사무총장

최재춘

협조자

시행 도장사업부-발송-20-0678 2020.10.29

접수
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내 101호 / 홈페이지 www.koreataekwondo.org

전화 02)420-4271~3

전송 02)420-4274 / 이메일 muk@kreatkd.kr

/ 공개